

2. 도시재개발법중개정법률

법률 제5,956호 1999. 3. 31.

개 정 이 유

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토지나 건축물 등의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,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..

주 요 내 용

- 가. 재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(현행 제6조제1항 삭제).
- 나. 재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의 필요는 없으나 공공의 안전 및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개수가 필요한 경우 시장·군수의 개수명령 규정을 삭제함(현행 제28조 삭제).
- 다. 재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 시행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(법 제33조).

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한다.

제6조제1항,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

제30조제1항중 “제27조 및 제29조”를 “제

27조”로 한다.

제33조제2항중 “하여야 하며,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”를 “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동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7조를 삭제한다.

제49조제4항 본문중 “토지등의 소유자·조

합 또는 제3개발자인 시행자는”을 “주택재 개발사업의 시행자중 토지등의 소유자·조합 또는 제3개발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회보